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58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노동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유지하고,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며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위원 해촉사유, 회의 일정 통보시기, 가사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시기 및 위원정수를 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 종료 시 자동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와 해촉, 정기회 관련 규정들을 존치시킴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 위원 해촉 사유를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회의 개최시 회의 일정 통보시기를 15일 전까지로 수정함(안 제22조, 안 제24조).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함(안 제25조).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함(안 부칙 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를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안 제22조(수정안 제24조) 제1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은 제6항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시장” 을 “위원장” 으로, “7일” 을 “15일” 로 한다.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안 제23조(수정안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신설할 수 있다” 를 “둔다” 로 한다.

안 부칙 제3조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와 ‘감정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는 이 조례” 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으로, “감정노동종사자”를 “감정노동”
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21조 (생략)</p> <p>제22조(위원의 해촉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p> <p>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p>	<p>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 ----- -----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삭제></p> <p>제20조 (현행 제21조와 같음)</p> <p><삭제></p>	<p>제19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20조(임기) (현행과 같음)</p> <p>제21조 (현행 제21조와 같음)</p> <p>제22조(위원의 해촉사유) ① (현행 제22조와 같음)</p> <p>1.·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23조 (생략)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2조(회의) <삭 제>

<삭 제>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을 적용이 어려운 경우
-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3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회의)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위원장-----
----- 15일 -----

③·④ (생략)

<신설>

제2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
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
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생략)

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 제2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
회를 두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신설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
한 사항

3.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 가사
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4조(수당 등) -----

----- 「서울특별시 위
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례」-----
-----.

제25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 . -----
-----.

③·④ (현행 제2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개정안 제22조제4항과 같
음)

제25조(분과위원회) ① -----

----- 둔다.

1. ~ 3. (개정안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와 같음)

②·③ (개정안 제2항 및 제3
항과 같음)

제26조(수당 등) (개정안 제24조
와 같음)

제27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부칙	부칙
<p data-bbox="183 347 303 380"><신 설></p>	<p data-bbox="603 347 999 705">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u>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u>’와 ‘<u>감정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u>’는 이 조례에 따른 ‘<u>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u>’와 ‘<u>감정노동종사자 분과위원회</u>’로 본다.</p>	<p data-bbox="1038 347 1436 929">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 「<u>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u>」 제12조에 따른 <u>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u>와 「<u>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u>」 제18조에 따른 <u>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u>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 ---- ‘<u>감정노동</u> ----- .</p>
<p data-bbox="183 985 303 1019"><신 설></p>	<p data-bbox="603 985 722 1019"><신 설></p>	<p data-bbox="1031 985 1436 1590">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u>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u>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② <u>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u>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점검·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와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을 “3년”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 을 “10명”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 을 “10명”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 제1항과 같 음)
제7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 -----3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 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④ ----- 점검· 평가-----.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및 프 리랜서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4. <u>노동자</u>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사유) ①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u>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생략)

<신설>

제24조(회의)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을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4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6조(수당 등)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와 ‘감정노동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